



#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473호 2020. 12. 21.(월)

## 조 례

|                                             |     |
|---------------------------------------------|-----|
| ○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2   |
| ○ 목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6   |
| ○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 11  |
| ○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 20  |
| ○ 목포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 24  |
| ○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 29  |
|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 34  |
| ○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37  |
| ○ 목포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              | 48  |
| ○ 목포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                | 50  |
| ○ 목포국제축구센터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53  |
| ○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55  |
| ○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59  |
| ○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61  |
| ○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65  |
| ○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 72  |
| ○ 목포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 81  |
| ○ 목포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 84  |
| ○ 목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86  |
| ○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 90  |
| ○ 목포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94  |
| ○ 목포시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 96  |
| ○ 목포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99  |
| ○ 목포근대역사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2 |
| ○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6 |
| ○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8 |

## 규 칙

|                                  |     |
|----------------------------------|-----|
| ○ 목포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 | 120 |
|----------------------------------|-----|

## 공 고

|                                              |     |
|----------------------------------------------|-----|
| ○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124 |
| ○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32 |

|    |  |  |  |  |  |  |  |  |
|----|--|--|--|--|--|--|--|--|
| 회람 |  |  |  |  |  |  |  |  |
|----|--|--|--|--|--|--|--|--|

제362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21일

##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14 호

###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액을 15%이상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의 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목포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황

4.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

③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 중 70%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황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이자 및 상환기간) 시장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과 상환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
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관리국장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비를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각 기금의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기금운용관
2. 금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9조(회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예산과장
2. 기금출납원 : 예산팀장

제10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1조(관계 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목포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목포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목포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자금이체) 「목포시 통합관리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통합계정으로 이체하고, 「목포시 재정안정화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체한다.

제4조(승계) 「목포시 통합관리기금」과 「목포시 재정안정화기금」이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한 금액 및 예수금과 전입금은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목포시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2항 “목포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를 “목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개정한다.

제362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21일

##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15 호

### 목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로 하고, 제3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기존규제의 재검토) 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소관 기존 규제  
에 대해 존치 필요성을 검토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지체없이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

제4조(기존규제의 심사)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

1. 제3조에 따라 기존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

2. 주민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 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의 심사를 할 때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한다.

③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중전의 제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노력하여야”를 “하여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lt;신 설&gt;

|                          |
|--------------------------|
| <b>규제 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b> |
|--------------------------|

|                          |                                                                                                                                                                                                          |                     |
|--------------------------|----------------------------------------------------------------------------------------------------------------------------------------------------------------------------------------------------------|---------------------|
| <b>자치법규</b><br>(행정규칙 포함) | △△△△ 조례/ 규칙/ 고시(목포시 훈령-00호) 등                                                                                                                                                                            |                     |
| <b>소관 부서</b>             | 과 장                                                                                                                                                                                                      |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
|                          | 팀 장                                                                                                                                                                                                      |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
|                          | 담당자                                                                                                                                                                                                      | (직책/ 성명/ 연락처 : 사무실) |
| <b>제·개정</b>              | 제정일 :                                                                                                                                                                                                    |                     |
|                          | 최근개정일 :                                                                                                                                                                                                  |                     |
| <b>검토 개요</b>             | <b>&lt;근거규정&gt;</b><br><input type="radio"/><br><br><b>&lt;주요내용&gt;</b><br><input type="radio"/><br><input type="radio"/><br><input type="radio"/><br><br><b>&lt;준치 필요성&gt;</b><br><input type="radio"/> |                     |
| <b>추진일정</b>              | <input type="radio"/> 개선방안 마련(~0.00.)<br><input type="radio"/> 개정 완료(~0.00.)                                                                                                                             |                     |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u>&lt;신 설&gt;</u> | <p><u>제3조(기존규제의 재검토) ①</u>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관 기존 규제에 대해 존치 필요성을 검토 할 수 있다.</p> <p><u>②</u>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 결과,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폐지하거나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해야 한다.</p>                                                                                                                                                                                    |
| <u>&lt;신 설&gt;</u> | <p><u>제4조(기존규제의 심사) ①</u>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p> <p>1. 제3조에 따라 기존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경우</p> <p>2. 주민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에 대한 입증을 요청한 경우</p> <p>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p> <p><u>②</u> 제1항에 따라 기존규제의 심사를 할 때 소관 부서장은 규제가 유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도록 한다.</p> |

제3조(구성) ① ~ ③ (생 략)

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⑤ · ⑥ (생 략)

제4조 ~ 제8조 (생 략)

③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존규제의 소관 부서장이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에는 위원회는 해당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5조(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 하여야 ----  
---

1. ~ 5. (현행과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제6조 ~ 제10조 (현행 제4조부터 제8조까지와 같음)

제362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21일

##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16 호

###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를 “장애인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제5항”을 “영 제8조 제6항”으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의3의 제1항, 제2항, 제3항 각 호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의제12항에 따른 추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본문의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10조 앞에 “제3장 보 칙”을 삭제한다.

제10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1조부터 제18조까지로 하고,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제9조 및 제10조로 하며,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11조 앞에 “제3장 보 칙”을 삽입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 중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을 “법 제177조”로 한다.

제15조(종전의 제14조) 단서 중 “제8조”를 “제9조”로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장애인용 자동차의 자동차세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5일 이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제5조(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 경과조치)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우 같은 법 제121조의2제4항, 제5항, 제12항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은 종전의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제6조에 따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 행 | 개<br>정<br>안                                                                                                                                                                                                                                                                                         |
|-----------------------------------------------------------------------------------------------------------------------------------------------------------------------------------------------------------------------------------------------------------------------------------------------------------------------------------------------------------------------------------------------------------------------------------------------------------------------|---|-----------------------------------------------------------------------------------------------------------------------------------------------------------------------------------------------------------------------------------------------------------------------------------------------------|
| 제2조 (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결정되어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2019년 6월 30일 이전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의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정도가 유지되고 있는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   | 제2조(시각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br>-----<br>-----<br>-----<br>-----<br>-----<br>-----<br>-----<br>-----<br>-----<br>-----<br>-----<br>-----<br><u>장</u><br><u>애인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u><br><u>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8조</u><br><u>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사람</u><br><u>이 -----</u><br>-----<br>-----<br>-----<br>----- |

확인되는 배우자·직계존속(직계  
존속의 재혼한 배우자를 포함한다)  
· 직계비속(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한다)·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공동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법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  
“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  
(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  
하는 1대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가 「지방세특례  
제한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부상 등록  
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6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①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조세특례

-----  
-----  
-----  
-----  
-----  
-----  
-----  
-----  
-----  
-----.

② (현행과 같음)

③ -----  
-----영 제8조제6항 -  
-----  
-----  
-----  
-----  
-----.

제6조(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법  
제78조의3의 제1항, 제2항, 제3항  
각 호에 따른 감면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 제78조의3

제한법」 제121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다만, 같은 법 제121조의5제3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정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제1호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해당 재산에 대한 산출세액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면 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5년간 해당 재산의 과세표준에 외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대상금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공제한다.

②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의제12항에 따른 추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를 추정한다.

1. 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2. 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 본문의 “5년”을 “10년”으로 하고, “2년”을 “5년”으로 한다.

3. 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 및 같은 항 제2호나목 본문의 “3년”을 “7년”으로 하고, “2년”을 “3년”으로 한다.

일정금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5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는 해  
당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5항제3호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5년간 공제대상금액의  
전액을 공제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해당하는 외국  
인투자기업이 같은 법 제121조의2  
제1항제1호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항제3호가목에 따른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  
세액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항제3호나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공제한다.

④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외국인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개시일 전에 같은 법 제121조의2제1항제1호의 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같은 법 제121조의2제12항 각 호와 같이 그 세액을 감면하거나 과세표준에서 공제한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항제4호나목에 따른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12항제4호다목에 따른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공제대상금액의 100분의50을 공제한다.

<신 설>

제8조 · 제9조 (생 략)

제3장 보 칙

<신 설>

제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9조 · 제10조 (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

<삭 제>

제3장 보 칙

제10조 (생 략)

제11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부동산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2조 · 제13조 (생 략)

제14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법에서 정한 감면율에 이 조례에서 추가로 감면율을 정하여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되는 경우에는 법 제177조의2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 제17조 (생 략)제11조 (현행 제10조와 같음)

제12조(감면 제외대상) -----  
----- 법 제177조-  
-----  
-----.

제13조 · 제14조 (현행 제12조 및 제13조와 같음)

제15조(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  
-----  
-----  
-----  
-----  
-----  
-----  
-----  
-----.

제16조 ~ 제18조 (현행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와 같음)

제362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21일

##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17 호

###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따른**”을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통장, 반장의 공부 열람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를 “**통장이 신청한 공부 열람수수료**”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다만, 당해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1종수급권자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

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유족  
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 유  
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인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  
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개별법에 <u>따른</u> 정한 것은 제외한다.                                                                                                                                                                                        |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 -----<br>-----<br>-----.<br>----- <u>따라</u> -----<br>---                                                                                                                                                                                                                                                                   |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1종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다만, 당해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증명발급은 제외한다.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 다만, 당해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증명발급은 제외한다.<br>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1종수급권자<br>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br>다.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br>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결정 · 등록된 자 |

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인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2. (생 략)

3. 지역 예비군중 소대장 및 동대장과 통장, 반장의 공부 열람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2. (현행과 같음)

3. -----  
통장이 신청한 공부 열람수수료

제362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21일

##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18 호

### 목포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민의 시정참여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고 시와 주민의 민주적인 협력기반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①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민참여는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동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와 주민이 함께 노력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3. “주민참여”란 시의 정책 입안 단계에서부터 집행, 평가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와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4. “협력”이란 시가 해야 할 책무와 주민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상호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 제공과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하고 참여자들의 역량을 향상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5조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주민의 의견을 시의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주민은 누구나 시의 정책 결정, 집행, 평가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를 가지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데 힘써야 한다.

② 주민이 시정과 관련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위원구성 등) 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구성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은 여성, 장애인 등 다양한 계층이 균형 있게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분야의 남성 또는 여성 전문 인력이 부족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며,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이하로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에는 동일인이 같은 위원회 위원으로 현저히 오랜 기간 역임하거나 다수의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는 그 기능에 따라 가능한 범위에서 정례화 하여 운영한다.

제7조(주민제안) 시장은 시정발전에 대한 주민의 창의적 의견을 상시 공모 등의 방법을 통해 제안을 받고 채택된 제안은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① 시장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청회 또는 토론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9조(예산편성의 주민참여)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정보를 공개하고 주민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운영을 위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시정정책 설명회의 청구) ① 주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5조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있는 주민 500명 이상의 연서로 시정정책 설명회(이하 “설명회”라 한다) 개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
2. 수사나 재판, 행정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
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4. 공청회 청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미 공청회를 실시하였던 내용과 동일한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청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설명회 개최가 곤란할 때에는 별도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공개의 원칙) 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가 개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회의록, 회의결과 및 회의안건 등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정 및 회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주민의견조사의 실시) ① 시장은 시의 정책 등에 대하여 입안단계에서부터 집행, 평가, 환류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변경·폐지할 때 다수 주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
2. 시의 정책과 관련된 다수 민원 또는 장기 민원을 처리할 때 주민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조사는 서면 또는 시 홈페이지, 인터넷 등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활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조사 후 즉시 주민의견조사의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공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여야 한다.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에 관하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62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21일

##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19 호

###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 “**사무·의전·청사방호, 시행정·행정구역조정·선거, 동향, 시민과의 소통, 동행정 지도·감독, F1대회 지원, 조직·인사·교육·훈련, 문서·기록물 관리, 공무원단체 및 후생에 관한 사항**”을“**사무·의전·청사방호, 시행정·행정구역조정·선거, 동향, 시민과의 소통, 동행정 지도·감독, F1대회 지원, 조직·인사·교육·훈련, 문서·기록물 관리, 공무원단체 및 후생, 공무직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관광과,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 문예시설관리과, 체육시설관리과, 목포자연사박물관**”을“**관광과, 관광거점도시추진단, 문화예술과, 교육체육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4호부터 제6항을 삭제하고, 제2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제2호“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추진 전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3호“문화예술진흥, 시립예술단체 운영·지원,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문화예술진흥, 시립예술단체 운영·지원, 노적봉예술공원 미술관 관리·운영, 문학관 관리·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3조제2항제4호 “건강증진, 지역보건, 모자보건, 출산지원, 만성질환, 방문보건, 질병예방, 감염병에 관한 사항”을“건강증진, 지역보건, 모자보건, 출산지원, 만성질환, 방문보건, 질병예방,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17조 제5호를 제8호로 하고, 제5호부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문예시설관리사무소

가. 문화예술회관, 시민문화체육센터(공연장, 일반음식점) 운영·관리 및 문화예술행사 공연·홍보에 관한 사항

#### 6.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가. 체육시설 운영·관리(부주산 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 포함), 세입관리에 관한 사항

#### 7. 목포자연사박물관

가. 자연사박물관, 문예역사관, 생활도자박물관, 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기구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중 “관광문화체육국장, 문예시설관리과장”을 “관광문화체육국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

③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체육시설관리과”를“체육시설관리사무소”로 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 (생 략)<br>① ~ ② (생 략)<br>1. <u>서무 · 의전 · 청사방호, 시행<br/>정 · 행정구역조정 · 선거, 동<br/>향, 시민과의 소통, 동행정 지<br/>도 · 감독, FI대회 지원, 조직 · 인<br/>사 · 교육 · 훈련, 문서 · 기록물<br/>관리, 공무원단체 및 후생에 관<br/>한 사항</u><br>2. ~ 5. (생 략)                                | 제7조 (현행과 같음)<br>① ~ ② (현행과 같음)<br>1. <u>서무 · 의전 · 청사방호, 시행<br/>정 · 행정구역조정 · 선거, 동<br/>향, 시민과의 소통, 동행정 지<br/>도 · 감독, FI대회 지원, 조직 · 인<br/>사 · 교육 · 훈련, 문서 · 기록물<br/>관리, 공무원단체 및 후생, 공무원<br/>운영에 관한 사항</u><br>2. ~ 5. (현행과 같음)              |
| 제8조(관광문화체육국에 두는 과)<br>① 관광문화체육국에 <u>관광과, 문<br/>화예술과, 교육체육과, 문예시설관<br/>리과, 체육시설관리과, 목포자연사<br/>박물관을</u> 둔다.<br>② (생 략)<br>1. (생 략)<br><u>&lt;신 설&gt;</u><br>2. 문화예술진흥, 시립예술단체 운<br>영 · 지원, 노적봉예술공원 미술<br>관 관리 · 운영에 <u>관한 사항</u><br>3. (생 략) | 제8조(관광문화체육국에 두는 과)<br>① ----- <u>관광과, 관광거<br/>점도시추진단, 문화예술과, 교육<br/>체육과를</u> 둔다.<br>② (현행과 같음)<br>1. (현행과 같음)<br>2. <u>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 추진<br/>전반에 관한 사항</u><br>3. -----<br>-----<br>---, <u>문학관 관리 · 운영 업무에<br/>관한 사항</u><br>4. (현행 제3호와 같음) |

4. 문화예술회관, 시민문화체육센터 (공연장, 일반음식점) 운영·관리 및 문화예술행사 공연·홍보, 문학관 관리·운영 업무에 관한 사항
5. 체육시설 운영·관리(부주산 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 포함), 세입관리에 관한 사항
6. 자연사박물관, 문예역사관, 생 활동자박물관, 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제13조 (생 략)

① ~ ② (생 략)

1. ~ 3. (생 략)

4. 건강증진, 지역보건, 모자보건, 출산지원, 만성질환, 방문보건, 질병 예방, 감염병에 관한 사항

5. (생 략)

## 제17조 (생 략)

1. ~ 4. (생 략)

&lt;신 설&gt;

&lt;신 설&gt;

&lt;삭 제&gt;

&lt;삭 제&gt;

&lt;삭 제&gt;

## 제13조 (현행과 같음)

① ~ ②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4. 건강증진, 지역보건, 모자보건, 출산지원, 만성질환, 방문보건, 질병 예방,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5. (현행과 같음)

## 제17조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5. 문예시설관리사무소

- 가. 문화예술회관, 시민문화체육센터(공연장, 일반음식점) 운영·관리 및 문화예술행사 공연·홍보에 관한 사항

6. 체육시설관리사무소

- 가. 체육시설 운영·관리(부주산 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 포함), 세입

<신 설>

5. (생 략)

제18조 ~ 제20조 (생 략)

관리에 관한 사항

7. 목포자연사박물관

가. 자연사박물관, 문예역사관, 생  
활도자박물관, 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8. (현행 제5호와 같음)

제18조 ~ 제20조 (현행과 같음)

제362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21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20 호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3〕

## 목포시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4조 관련)

| 기관별<br>직급별 | 총계    | 본청    | 의회 | 직속기관 | 사업소 | 동  |
|------------|-------|-------|----|------|-----|----|
| 총 계        | 1,296 | 1,296 |    |      |     |    |
| 정무직계       | 1     | 1     |    |      |     |    |
| 정무직        | 1     | 1     |    |      |     |    |
| 일반직계       | 1,275 | 1,275 |    |      |     |    |
| 3급         | 1     | 1     |    |      |     |    |
| 4급         | 9     | 5     | 1  | 1    | 2   |    |
| 5급         | 69    | 26    | 3  | 3    | 14  | 23 |
| 6급이하       | 1,196 | 1,196 |    |      |     |    |
| 연구직계       | 17    | 17    |    |      |     |    |
| 연구관        |       |       |    |      |     |    |
| 연구사        | 17    | 17    |    |      |     |    |
| 지도직계       | 3     | 3     |    |      |     |    |
| 지도관        |       |       |    |      |     |    |
| 지도사        | 3     | 3     |    |      |     |    |

##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행                                |       |       |    |       |     |    | 개정안                               |       |       |    |       |     |    |
|-----------------------------------|-------|-------|----|-------|-----|----|-----------------------------------|-------|-------|----|-------|-----|----|
| [별표 3]<br>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       |       |    |       |     |    | [별표 3]<br>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제4조 관련) |       |       |    |       |     |    |
| 직급별\기관별                           | 총 계   | 본 청   | 의회 | 직속 기관 | 사업소 | 동  | 직급별\기관별                           | 총 계   | 본 청   | 의회 | 직속 기관 | 사업소 | 동  |
| 총 계                               | 1,296 | 1,296 |    |       |     |    | 총 계                               | 1,296 | 1,296 |    |       |     |    |
| 정무직 계                             | 1     |       |    |       |     |    | 정무직 계                             | 1     |       |    |       |     |    |
| 시 장                               | 1     | 1     |    |       |     |    | 시 장                               | 1     | 1     |    |       |     |    |
| 일반직 계                             | 1,275 | 1,275 |    |       |     |    | 일반직 계                             | 1,275 | 1,275 |    |       |     |    |
| 3급                                | 1     | 1     |    |       |     |    | 3급                                | 1     | 1     |    |       |     |    |
| 4급                                | 9     | 4     | 1  | 1     | 3   |    | 4급                                | 9     | 5     | 1  | 1     | 2   |    |
| 5급                                | 68    | 24    | 3  | 3     | 15  | 23 | 5급                                | 69    | 26    | 3  | 3     | 14  | 23 |
| 6급 이하                             | 1,197 | 1,197 |    |       |     |    | 6급 이하                             | 1,196 | 1,196 |    |       |     |    |
| 연구직 계                             | 17    | 17    |    |       |     |    | 연구직 계                             | 17    | 17    |    |       |     |    |
| 연구관                               |       |       |    |       |     |    | 연구관                               |       |       |    |       |     |    |
| 연구사                               | 17    | 17    |    |       |     |    | 연구사                               | 17    | 17    |    |       |     |    |
| 지도직 계                             | 3     | 3     |    |       |     |    | 지도직 계                             | 3     | 3     |    |       |     |    |
| 지도관                               |       |       |    |       |     |    | 지도관                               |       |       |    |       |     |    |
| 지도사                               | 3     | 3     |    |       |     |    | 지도사                               | 3     | 3     |    |       |     |    |

제362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21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21 호

###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봉안당 사용신청은 별지 1호 서식에 의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다.**”를 “**하며, 봉안당 사용 승인증은 별지 2호 서식에 의한다**”로 한다.

제7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환급률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이 경우 희생공헌자의 범위는 별표2와 같다.  
제12조제3항 중 “**공설묘지에 합동매장할**”을 “**유택동산에 화장한 유골을 뿌릴**”로 한다.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

별표 1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비고

1. 개장유골 화장장 사용료는 분묘 매장 장소로 한다.

별표 3을 별표 2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여 그 시설이 반납된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 환급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규정에 따른다.

## [별표 1]

## 장사시설의 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 구 분   | 내 용              | 사 용 료(원)   |                                        |                     |         |        |  |
|-------|------------------|------------|----------------------------------------|---------------------|---------|--------|--|
|       |                  | 목포시<br>거주자 | 무안군·신안군·<br>함평군·영암군·<br>강진군·장흥군<br>거주자 | 그밖의<br>시·군·구<br>거주자 |         |        |  |
| 화 장 장 | 대인(만 15세 이상) 1구당 | 90,000     | 495,000                                | 550,000             |         |        |  |
|       | 소인(만 14세 이하) "   | 40,000     | 180,000                                | 200,000             |         |        |  |
|       | 사산아 "            | 30,000     | 40,000                                 | 40,000              |         |        |  |
|       | 개장유골 "           | 40,000     | 유연고                                    | 무연고                 | 유연고     | 무연고    |  |
|       |                  |            | 150,000                                | 70,000              | 150,000 | 70,000 |  |
| 봉 안 당 | 15년 사용 1기당       | 100,000    | 150,000                                | 150,000             |         |        |  |
|       | 10년 사용 1기당       | 70,000     | 105,000                                | 105,000             |         |        |  |
| 유택동산  | 영구 1구당           | 10,000     | 10,000                                 | 10,000              |         |        |  |

## 비고

1. 개장유골 화장장 사용료는 분묘 매장 장소로 한다.

## 〔별표 2〕

## 사용료 감면 (제8조 관련)

| 구분                            | 감면내용                                                                                                                                                                                                                                                                                                                                                                                                                                                                                                                                                                                                                                                                                                                                                                                                                                | 감면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전 액   |         |                      |                                                                                                                                                                          |                 |            |                |             |                   |                                  |                         |                    |                               |                       |                     |                                                          |                          |                                    |     |  |
| 2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table><tr><th>법 률 명</th><th>적 용 대 상</th></tr><tr><td>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td><td>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td></tr><tr><td>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td><td>순국선열, 애국지사</td></tr><tr><td>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td><td>중·장기복무 제대군인</td></tr><tr><td>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td><td>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td></tr><tr><td>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td><td>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td></tr><tr><td>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td><td>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td></tr><tr><td>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td><td>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td></tr><tr><td>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td><td>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td></tr></table> | 법 률 명 | 적 용 대 상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순국선열, 애국지사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 전 액 |  |
| 법 률 명                         | 적 용 대 상                                                                                                                                                                                                                                                                                                                                                                                                                                                                                                                                                                                                                                                                                                                                                                                                                             |       |         |                      |                                                                                                                                                                          |                 |            |                |             |                   |                                  |                         |                    |                               |                       |                     |                                                          |                          |                                    |     |  |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       |         |                      |                                                                                                                                                                          |                 |            |                |             |                   |                                  |                         |                    |                               |                       |                     |                                                          |                          |                                    |     |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순국선열, 애국지사                                                                                                                                                                                                                                                                                                                                                                                                                                                                                                                                                                                                                                                                                                                                                                                                                          |       |         |                      |                                                                                                                                                                          |                 |            |                |             |                   |                                  |                         |                    |                               |                       |                     |                                                          |                          |                                    |     |  |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         |                      |                                                                                                                                                                          |                 |            |                |             |                   |                                  |                         |                    |                               |                       |                     |                                                          |                          |                                    |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         |                      |                                                                                                                                                                          |                 |            |                |             |                   |                                  |                         |                    |                               |                       |                     |                                                          |                          |                                    |     |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       |         |                      |                                                                                                                                                                          |                 |            |                |             |                   |                                  |                         |                    |                               |                       |                     |                                                          |                          |                                    |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         |                      |                                                                                                                                                                          |                 |            |                |             |                   |                                  |                         |                    |                               |                       |                     |                                                          |                          |                                    |     |  |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         |                      |                                                                                                                                                                          |                 |            |                |             |                   |                                  |                         |                    |                               |                       |                     |                                                          |                          |                                    |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       |         |                      |                                                                                                                                                                          |                 |            |                |             |                   |                                  |                         |                    |                               |                       |                     |                                                          |                          |                                    |     |  |
| 3                             | 「목포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 30%   |         |                      |                                                                                                                                                                          |                 |            |                |             |                   |                                  |                         |                    |                               |                       |                     |                                                          |                          |                                    |     |  |
| 4                             | 「목포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 50%   |         |                      |                                                                                                                                                                          |                 |            |                |             |                   |                                  |                         |                    |                               |                       |                     |                                                          |                          |                                    |     |  |
| 5                             | 관내 지역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불법체류 외국인 등의 경우(다만, 장제비 지원자의 경우 제외)                                                                                                                                                                                                                                                                                                                                                                                                                                                                                                                                                                                                                                                                                                                                                                                | 전 액   |         |                      |                                                                                                                                                                          |                 |            |                |             |                   |                                  |                         |                    |                               |                       |                     |                                                          |                          |                                    |     |  |
| 6                             | 그 밖에 시장이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전 액   |         |                      |                                                                                                                                                                          |                 |            |                |             |                   |                                  |                         |                    |                               |                       |                     |                                                          |                          |                                    |     |  |

[별표 3]

##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 반환기준 (제7조제4항 관련)

| 연차별      | 환급률 | 연차별       | 환급률 | 연차별       | 환급률 |
|----------|-----|-----------|-----|-----------|-----|
| 6개월 이내   | 75% | 5년초과~6년   | 45% | 11년초과~12년 | 15% |
| 6개월초과~1년 | 70% | 6년초과~7년   | 40% | 12년초과~13년 | 10% |
| 1년초과~2년  | 65% | 7년초과~8년   | 35% | 13년초과~14년 | 5%  |
| 2년초과~3년  | 60% | 8년초과~9년   | 30% | 14년초과~15년 | 2%  |
| 3년초과~4년  | 55% | 9년초과~10년  | 25% |           |     |
| 4년초과~5년  | 50% | 10년초과~11년 | 20% |           |     |

[별지 1호 서식]

## 목포 추모공원 봉안당(추모의집) 안치 신청서

|       |                                                   |  |          |  |
|-------|---------------------------------------------------|--|----------|--|
| 사 망 자 | 성 명                                               |  | 주민번호     |  |
|       | 주 소                                               |  | 사망일자     |  |
|       |                                                   |  | 사망장소     |  |
| 신 청 자 | 성 명                                               |  | 주민번호     |  |
|       | 주 소                                               |  | 연 락 처    |  |
|       |                                                   |  | 사망자와의 관계 |  |
| 안치기간  |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따라 위 사망자 화장 유골에 대하여 목포추모공원 봉안당(추모의 집)에 안치코자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 포 시 장 귀하

[별지 2호 서식]

## 목포 추모공원 봉안당(추모의집) 안치(사용) 승인증

|       |                                                   |                     |          |  |
|-------|---------------------------------------------------|---------------------|----------|--|
| 봉안시설  | 명 칭                                               | 목포추모공원<br>봉안당(추모의집) | 안치번호     |  |
|       | 주 소                                               | 목포시 고하대로 1140-41    | 안치일자     |  |
| 사 망 자 | 성 명                                               |                     | 주민번호     |  |
|       | 주 소                                               |                     | 사망일자     |  |
|       |                                                   |                     | 사망장소     |  |
| 신 청 자 | 성 명                                               |                     | 주민번호     |  |
|       | 주 소                                               |                     | 연 락 처    |  |
|       |                                                   |                     | 사망자와의 관계 |  |
| 안치기간  | 년 (      년      월      일 ~      년      월      일 ) |                     |          |  |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제5조에 따라 위 사망자 화장 유골에 대하여 목포 추모공원 봉안당(추모의 집)에 안치를 승인합니다.

같은 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안치기간이 경과한 후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재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고한 후, 봉안 유골을 유족동산에 뿌릴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목 포 시 장

직인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5조(사용신고) 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u>한다</u> .                                                                                                                                  | 제5조(사용신고) ① -----<br>----- <u>하며</u> ,<br><u>불안당 사용신청은 별지 1호 서식에 의한다</u> .                                                                                                          |
| 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인하여야 <u>한다</u> .                                                                                                                              | ② -----<br>-----<br>-- <u>하며, 불안당 사용 승인증은 별지 2호 서식에 의한다</u>                                                                                                                         |
| 제7조(사용료 등) ① ~ ③ (생략)<br><u>&lt;신설&gt;</u>                                                                                                                                            | 제7조(사용료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br>④ <u>시장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해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환급률은 별표 3과 같다</u> .                                                    |
| 제8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사시설의 사용료를 별표 2와 같이 일부 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br>1. (생략)<br>2.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u>따른 국가유공자</u><br>3. 「국가보훈 기본법」에 <u>따른 희생 · 공헌자</u><br>4. ~ 7. (생략) | 제8조(사용료 감면) ① -----<br>-----<br>-----<br>-----.<br>1. (현행과 같음)<br>2. 「국가보훈 기본법」에 <u>따른 희생 · 공헌자, 이 경우 희생공헌자의 범위는 별표2와 같다</u> .<br><u>&lt;삭제&gt;</u><br>3. ~ 6. (현행 제4호부터 제7호까지와 같음) |

## ② (생 략)

## 제12조(불안유골의 처리) ①·② (생 략)

③ 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이 경과한 후에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재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기간을 정하여 공고한 후 공설 묘지에 합동매장할 수 있다.

## 제13조(개장승인)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사용기간 만료 이전에 유골을 인도한 경우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 〔별표 1〕

## 장사시설의 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 구 분   | 내 용              | 사 용 료(원) |                             |                           |                           |
|-------|------------------|----------|-----------------------------|---------------------------|---------------------------|
|       |                  | 목포시 거주자  | 무안군·신안군·함평군·영암군·강진군·장흥군 거주자 | 그밖의 시·군·구 거주자             |                           |
| 화 장 장 | 대인(만 15세 이상) 1구당 | 90,000   | 495,000                     | 550,000                   |                           |
|       | 소인(만 14세 이하) "   | 40,000   | 180,000                     | 200,000                   |                           |
|       | 사산아 "            | 30,000   | 40,000                      | 40,000                    |                           |
|       | 개장유골 "           | 40,000   | 유연고 무연고<br>150,000 70,000   | 유연고 무연고<br>150,000 70,000 | 유연고 무연고<br>150,000 70,000 |
| 불 안 당 | 15년 사용 1기당       | 100,000  | 150,000                     | 150,000                   |                           |
|       | 10년 사용 1기당       | 70,000   | 105,000                     | 105,000                   |                           |
| 유택동산  | 영구 1구당           | 10,000   | 10,000                      | 10,000                    |                           |

## ② (현행과 같음)

## 제12조(불안유골의 처리) ①·②(현행과 같음)

③ -----  
-----  
----- 유택동산에 화장한 유골을 뿌릴 -----.

## 제13조(개장승인) ① (현행과 같음)

## &lt;삭 제&gt;

## 〔별표 1〕

## 장사시설의 사용료(제7조제1항 관련)

| 구 분   | 내 용              | 사 용 료(원) |                             |                           |                           |
|-------|------------------|----------|-----------------------------|---------------------------|---------------------------|
|       |                  | 목포시 거주자  | 무안군·신안군·함평군·영암군·강진군·장흥군 거주자 | 그밖의 시·군·구 거주자             |                           |
| 화 장 장 | 대인(만 15세 이상) 1구당 | 90,000   | 495,000                     | 550,000                   |                           |
|       | 소인(만 14세 이하) "   | 40,000   | 180,000                     | 200,000                   |                           |
|       | 사산아 "            | 30,000   | 40,000                      | 40,000                    |                           |
|       | 개장유골 "           | 40,000   | 유연고 무연고<br>150,000 70,000   | 유연고 무연고<br>150,000 70,000 | 유연고 무연고<br>150,000 70,000 |
| 불 안 당 | 15년 사용 1기당       | 100,000  | 150,000                     | 150,000                   |                           |
|       | 10년 사용 1기당       | 70,000   | 105,000                     | 105,000                   |                           |
| 유택동산  | 영구 1구당           | 10,000   | 10,000                      | 10,000                    |                           |

비고

1. 개장유골 화장장 사용료는 분묘 매장 장소로 한다.

## 〔별표 3〕

## 사용료 감면 (제8조 관련)

| 구분 | 감면내용                                                    | 감면액 | 비고 |
|----|---------------------------------------------------------|-----|----|
| 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전 액 |    |
| 2  |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전 액 |    |
| 3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전 액 |    |
| 4  | 「목포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 30% |    |
| 5  | 「목포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 50% |    |
| 6  | 관내 지역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불법체류 외국인 등의 경우 (다만, 장제비 지원자의 경우 제외)   | 전 액 |    |
| 7  | 그 밖에 시장이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전 액 |    |

## 〔별표 2〕

## 사용료 감면 (제8조 관련)

| 구분 | 감면내용                                                     | 감면액                                                                                                                                                                      | 비고  |
|----|----------------------------------------------------------|--------------------------------------------------------------------------------------------------------------------------------------------------------------------------|-----|
| 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전 액                                                                                                                                                                      |     |
| 2  | <삭 제>                                                    |                                                                                                                                                                          |     |
| 2  |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                                                                                                                                                                          | 전 액 |
|    | 법 률 명                                                    | 적 용 대 상                                                                                                                                                                  |     |
|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     |
|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순국선열, 애국지사                                                                                                                                                               |     |
|    |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
|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     |
|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     |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
|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
|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     |
| 3  | 「목포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               | 30%                                                                                                                                                                      |     |
| 4  | 「목포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 (배우자, 부모, 자녀) | 50%                                                                                                                                                                      |     |
| 5  | 관내 지역에서 사망한 무연고자, 불법체류 외국인 등의 경우 (다만, 장제비 지원자의 경우 제외)    | 전 액                                                                                                                                                                      |     |
| 6  | 그 밖에 시장이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전 액                                                                                                                                                                      |     |

〔별표 3〕

&lt;신 설&gt;

〔별표 3〕

**장사시설의 사용료 등 반환기준**  
(제7조제4항 관련)

| 연차별          | 환급률 | 연차별           | 환급률 | 연차별           | 환급률 |
|--------------|-----|---------------|-----|---------------|-----|
| 6개월<br>이내    | 75% | 5년초과<br>~6년   | 45% | 11년초과<br>~12년 | 15% |
| 6개월초과<br>~1년 | 70% | 6년초과<br>~7년   | 40% | 12년초과<br>~13년 | 12% |
| 1년초과<br>~2년  | 65% | 7년초과<br>~8년   | 35% | 13년초과<br>~14년 | 10% |
| 2년초과<br>~3년  | 60% | 8년초과<br>~9년   | 30% | 14년초과<br>~15년 | 5%  |
| 3년초과<br>~4년  | 55% | 9년초과<br>~10년  | 25% | 15년초과         | 2%  |
| 4년초과<br>~5년  | 50% | 10년초과<br>~11년 | 20% |               |     |

제362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21일

##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22 호

### 목포시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어린이집 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 나목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어린이집에서 운행하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운행되는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어린이집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이외에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1. 어린이집 통학버스 안전보호 장치 설치 지원사업
2.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사업
3. 그 밖에 어린이집 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도·점검 등) ① 시장은 어린이집 통학버스의 안전에 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에 시정조치 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62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21일

##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23 호

### 목포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청소년의 인터넷중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2. “인터넷중독”이란 컴퓨터,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한다.
3.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이란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을 인터넷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고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2.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및 치유 방안
3.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그 밖에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 기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예방교육 및 홍보) 시장은 청소년을 인터넷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터넷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전문가 등 자문) 시장은 청소년의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인터넷중독 관련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자문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62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국제축구센터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21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24 호

### 목포국제축구센터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국제축구센터 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22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경우를 제외</u> <u>하고는</u>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br>1. ~ 4. (생략)<br>②·③ (생략) | 제22조(사용료 등의 반환) ① -----<br>-----<br>----- <u>경우에는 일부</u><br><u>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u><br>1. ~ 4. (현행과 같음)<br>②·③ (현행과 같음) |

제362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21일

##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25 호

###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문학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제1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제37조 앞에 “제7장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삭제한다.

제37조 앞에 “제6장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삽입한다.

제40조 앞에 “제8장 보 칙”을 삭제한다.

제40조 앞에 “제7장 보 칙”을 삽입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9조 (무료관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9조 (무료관람) ① -----<br>-----<br>-----<br>--.                   |
| 1. (생략)                                                                 | 1. (현행과 같음)                                                   |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3.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4.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 5. ~ 12. (생략)                                                           | 5. ~ 12. (현행과 같음)                                             |
| 13. 「목포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신설>                                                                    | 14.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 <신설>                                                                    | 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신설>                                                                    | 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신 설>

14. (생 략)

② (생 략)

제7장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신 설>

제8장 보 칙

<신 설>

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  
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  
류지출신 포로가족

18. (현행 제14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6장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삭 제>

제7장 보 칙

제362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21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26 호

###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를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로 한다.

별표 3 중 부주산 국제파크 골프장란과 목포시 궁도장란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               |           |                                                                           |       |           |                                                                           | 개정안                                                                                                      |         |        |               |           |                                                                           |       |       |       |                                   |
|------------------------------------------------------------------------------------------------------------------|--------|---------------|-----------|---------------------------------------------------------------------------|-------|-----------|---------------------------------------------------------------------------|----------------------------------------------------------------------------------------------------------|---------|--------|---------------|-----------|---------------------------------------------------------------------------|-------|-------|-------|-----------------------------------|
| 제17조(사용료의 반환) ①기 납부된<br>사용료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u><br>1. ~ 5. (생략)<br>② (생략) |        |               |           |                                                                           |       |           |                                                                           | 제17조(사용료의 반환) ①-----<br>-----<br>----- <u>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u><br>1. ~ 5. (현행과 같음)<br>② (현행과 같음) |         |        |               |           |                                                                           |       |       |       |                                   |
| [별표 3]                                                                                                           |        |               |           |                                                                           |       |           |                                                                           | [별표 3](제12조관련)                                                                                           |         |        |               |           |                                                                           |       |       |       |                                   |
| 체육시설 연습사용료 (단위:원)                                                                                                |        |               |           |                                                                           |       |           |                                                                           | 체육시설 연습사용료 (단위:원)                                                                                        |         |        |               |           |                                                                           |       |       |       |                                   |
| 구분                                                                                                               | 기준     | 개인            |           |                                                                           | 단체    |           |                                                                           | 비고                                                                                                       | 구분      | 기준     | 개인            |           |                                                                           | 단체    |       |       | 비고                                |
|                                                                                                                  |        | 어른            | 청소년<br>군인 | 경노·어린이<br>국가유공자 등<br>장애인<br>수급자<br>전라남도지사가<br>발급한<br>지원봉사<br>마일리지증<br>소지자 | 어른    | 청소년<br>군인 | 경노·어린이<br>국가유공자 등<br>장애인<br>수급자<br>전라남도지사가<br>발급한<br>지원봉사<br>마일리지증<br>소지자 |                                                                                                          |         |        | 어른            | 청소년<br>군인 | 경노·어린이<br>국가유공자 등<br>장애인<br>수급자<br>전라남도지사가<br>발급한<br>지원봉사<br>마일리지증<br>소지자 |       |       |       |                                   |
| 유달경기장                                                                                                            | 1회     | 1,300         | 1,000     | 900                                                                       | 1,000 | 800       | 700                                                                       |                                                                                                          | 유달경기장   | 1회     | 1,300         | 1,000     | 900                                                                       | 1,000 | 800   | 700   |                                   |
| 목포살내체육관                                                                                                          | 1회     | 1,300         | 1,000     | 900                                                                       | 1,000 | 800       | 700                                                                       |                                                                                                          | 목포살내체육관 | 1회     | 1,300         | 1,000     | 900                                                                       | 1,000 | 800   | 700   |                                   |
| 실내수영장                                                                                                            | 일권     | 2,500         | 2,000     | 1,500                                                                     | 2,000 | 1,500     | 1,000                                                                     | 2시간 기준                                                                                                   | 실내수영장   | 일권     | 2,500         | 2,000     | 1,500                                                                     | 2,000 | 1,500 | 1,000 | 2시간 기준                            |
|                                                                                                                  | 월회원    | 45,000        | 35,000    | 25,000                                                                    |       |           |                                                                           |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수영장 사용료 10퍼센트 감면                                                                        |         | 월회원    | 45,000        | 35,000    | 25,000                                                                    |       |       |       |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수영장 사용료 10퍼센트 감면 |
|                                                                                                                  | 월강습    | 10,000원 적용    |           |                                                                           |       |           |                                                                           |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수영장 사용료 10퍼센트 감면                                                                        |         | 월강습    | 10,000원 적용    |           |                                                                           |       |       |       | 13세 이상 55세 이하 여성 수영장 사용료 10퍼센트 감면 |
| 다이빙장                                                                                                             | 2시간 기준 | 5,000         | 4,000     | 3,000                                                                     | 4,000 | 3,000     | 2,000                                                                     |                                                                                                          | 다이빙장    | 2시간 기준 | 5,000         | 4,000     | 3,000                                                                     | 4,000 | 3,000 | 2,000 |                                   |
| 부주산국제마크골프장                                                                                                       | 1인당    | 2,000         | 1,000     | 1,000                                                                     | 1,000 | 500       | 500                                                                       | 36홀 사용료                                                                                                  |         |        |               |           |                                                                           |       |       |       |                                   |
| 목포시공도장                                                                                                           | 2시간 기준 | 2,000         | 1,000     | 1,000                                                                     | 1,000 | 500       | 500                                                                       |                                                                                                          |         |        |               |           |                                                                           |       |       |       |                                   |
| 정구장테니스장                                                                                                          | 2시간 기준 | 주간            | 2,000     | 1,500                                                                     | 1,000 | 1,500     | 1,200                                                                     | 800                                                                                                      | 정구장테니스장 | 2시간 기준 | 주간            | 2,000     | 1,500                                                                     | 1,000 | 1,500 | 1,200 | 800                               |
|                                                                                                                  | 야간     | 주간 사용료에 5할 가산 |           |                                                                           |       |           |                                                                           |                                                                                                          |         | 야간     | 주간 사용료에 5할 가산 |           |                                                                           |       |       |       |                                   |
|                                                                                                                  | 월회원    | 30,000        | 22,500    | 10,000                                                                    |       |           |                                                                           |                                                                                                          |         | 월회원    | 30,000        | 22,500    | 10,000                                                                    |       |       |       |                                   |
|                                                                                                                  | 월강습    | 70,000        |           |                                                                           |       |           |                                                                           |                                                                                                          |         | 월강습    | 70,000        |           |                                                                           |       |       |       |                                   |
| ※ 테니스장 월회원은 주간금액 × 15일을 기준으로 하였음.<br>※ “국가유공자 등”이란 조례 제16조제4호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        |               |           |                                                                           |       |           |                                                                           | ※ 테니스장 월회원은 주간금액 × 15일을 기준으로 하였음.<br>※ “국가유공자 등”이란 조례 제16조제4호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                             |         |        |               |           |                                                                           |       |       |       |                                   |

제362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21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27 호

###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자연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제38조 앞에 “제7장 교육·홍보활동”을 삭제한다.

제38조 앞에 “제6장 교육·홍보활동”을 삽입한다.

제41조 앞에 “제8장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을 삭제한다.

제41조 앞에 “제7장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을 삽입한다.

제43조 앞에 “제9장 보 칙”을 삭제한다.

제43조 앞에 “제8장 보 칙”을 삽입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7조(무료관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제7조(무료관람) ① -----<br>-----<br>-----<br>---                    |
| 1. (생략)                                                                | 1. (현행과 같음)                                                   |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3. 「독립유공자등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5.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 6. ~ 13. (생략)                                                          | 6. ~ 13. (현행과 같음)                                             |
| 14. 「목포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신설>                                                                   | 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
| <신설>                                                                   | 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                       |

<신 설>

② (생 략)

제7장 교육·홍보활동

<신 설>

제8장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신 설>

제9장 보 칙

<신 설>

에 해당하는 사람

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  
에 해당하는 사람

② (현행과 같음)

<삭 제>

제6장 교육·홍보활동

<삭 제>

제7장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삭 제>

제8장 보 칙

제362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21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28 호

###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어린이바다과학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3.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휴관일

제4조제1항 본문 중 “관람을 하고자 하는 자”를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마일리지증 소지자”를 “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10호 중 “자”를 각각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자로서”를 “사람으로서”로,

“**제출한 자**”를 “제출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3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제7조제1호 중 “**만취자**”를 “만취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지한 자**”를 “소지한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방해하는 자**”를 “방해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음주**”를 “음주, 흡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위를 한 자**”를 “행위를 한 사람”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오손한 자(이하 “손괴자”라 한다)**”를 “오손한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입체영상관의 이용자**”를 “입체영상관을 이용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1조 앞에 “제4장 교육·홍보활동”을 삭제한다.

제11조 앞에 “제3장 교육·홍보활동”을 삽입한다.

제12조제2항 중 “**교육 참여자**”를 “**교육에 참여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3조 앞에 “**제5장 자원봉사자 및 도슨트 모집 및 운용**”을 삭제한다.

제13조 앞에 “**제4장 자원봉사자 및 도슨트 모집 및 운용**”을 삽입한다.

제15조 앞에 “**제6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15조 앞에 “**제5장 보칙**”을 삽입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3조(휴관) ① 과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br>1. 2. (생략)<br><u>&lt;신설&gt;</u>                                                                                                                   | 제3조(휴관) ① -----<br>-----.<br>1. 2. (현행과 같음)<br>3. <u>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휴관일</u>                                             |
|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시장은 과학관의 <u>관람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u> 관람권을 발행하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6월 1일부터 8월말까지는 토요일 및 공휴일은 1시간 연장 운영할 수 있다.<br>② · ③ (생략)                                   |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① -----<br>--- <u>관람하고자 하는 사람</u> -----<br>-----<br>-----.<br>-----<br>-----.<br>② · ③ (현행과 같음)                            |
| 제5조(관람료) ① 과학관 전시물을 <u>관람하고자 하는 자는</u>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br>② · ③ (생략)<br>④ 전라남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u>마일리지증 소지자</u> 에 대하여는 관람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하여 산정하되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 제시한 경우에 한정한다. | 제5조(관람료) ① ----- <u>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u> -----<br>-----.<br>② · ③ (현행과 같음)<br>④ ----- <u>마일리지증을 소지한 사람</u> -----<br>-----<br>-----.<br>-----. |
| 제6조(무료관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br>1. (생략)                                                                                                   | 제6조(무료관람) ① -----<br>-----<br>-----<br>---.<br>1. (현행과 같음)                                                                                |

2.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독립유공자등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6. · 7. (생 략)

8.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

9. (생 략)

10. 전시물 기증 등 과학관 발전에  
기여한 자

11. · 12. (생 략)

13. 「공직선거법」 제2조 및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제22조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자

14. 「목포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신 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  
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6. · 7. (현행과 같음)

8. ----- 사람

9. (현행과 같음)

10. -----  
사람

11. · 12. (현행과 같음)

13. -----  
-----  
-----  
사람으로서 -----  
-----  
----- 제출한 사람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

<신 설>

<신 설>

② (생 략)

제7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1. 만취자
2. 위험물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자
3. 삭 제
4. (생 략)
5.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유지를 방해하는 자

제8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과학관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 4. (생 략)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변상 및 손해배상) ① 시장은 과학관내 전시물 및 시설물을 파괴하

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② (현행과 같음)

제7조(관람의 금지) -----  
-----  
---

1. 만취한 사람
2. ----- 소지한 사람

4. (현행과 같음)

5. -----  
방해하는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 ① -----  
-----  
-----  
-----.

1. 음주, 흡연 -----

2. ~ 4. (현행과 같음)

② -----  
---- 행위를 한 사람-----  
-----.

제9조(변상 및 손해배상) ① -----  
----- 오

거나 오손한 자(이하 “손괴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2개의 공인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으로 산정한 금액과 소요된 제반 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을 변상토록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10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생 략)

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입체영상관의 이용자에게는 과학관 관람료와 별도로 별표2과 같이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나머지 시설에 대하여는 「목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하여 다른 사람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4장 교육·홍보활동

<신 설>

제12조(교육프로그램의 운영) ① (생 략)

② 시장은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 등을 위하여 교육참여자로부터 일정액의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장 자원봉사자 및 도슨트 모집 및

운용

<신 설>

제6장 보칙

<신 설>

손한 사람-----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편의시설 설치·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입체영상관을 이용하는 사람-----

-----

-----

-----

-----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3장 교육·홍보활동

제12조(교육프로그램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

----- 교육에 참여하

는 사람-----.

<삭 제>

제4장 자원봉사자 및 도슨트 모집

및 운용

<삭 제>

제5장 보칙

제362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21일

##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29 호

###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목포시가”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목포시가”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로서”를 “제9조2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은행 또는 금융기관을”을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로 한다.

1. “목포시 지역화폐”란 발행자인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지역화폐의 종류는 종이지역화폐, 전자지역화폐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 또는 모바일 등으로 발행하는 전자지역화폐는 권면금액을 따로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권면금액 :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2. 유효기간 또는 발행일

3. 위변조 방지를 위한 일련번호, 유의사항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목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자

②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 (판매대행점과의 협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판매대행점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목포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업무실적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실적을 목포사랑상품권의 발행 유통시스템에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제4항 중 “등을 변경하거나 지정”을 “등이 변경되거나 가맹점 등록”으로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0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의 취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용자등이 알 수 있도록 목포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제1항 중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를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위탁의 절차 및 판매대행점”을 “판매대행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를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 중 “위탁의 절차 및 운영대행사”를 “운영대행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서에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판매대행점 및 가맹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맹점 등록으로 간주한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등록 된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판매대행점 역할을 수행하는 운영 대행 협약을 한 경우에는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로 본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u>목포시가 발행하는 목포시 지역화폐의 발행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전 통시장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u>                                                                                                                          | 제1조(목적) ----- 「 <u>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u>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목포시가 -----<br>-----.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br>-----.                                                                                                                                                                                                                                                                                             |
| 1. “목포시 지역화폐”란 발행자인 목포시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매출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제2호가목에 따른 개별 가맹점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시장 또는 해당 개별가맹점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 | 1. “목포시 지역화폐”란 발행자인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시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발행자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말한다. |
| 2. (생략)                                                                                                                                                                                                                                               | 2. (현행과 같음)                                                                                                                                                                                                                                                                                                         |

3. “판매대행점”이란 제22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지역화폐의 보관, 판매, 환전 업무 등을 대행하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 4. (생 략)

제4조(지역화폐의 발행 등) ① ~ ③ (생 략)

④ 지역화폐의 종류, 권면가액, 발행 규모는 시장이 정한다.

제9조(가맹점의 등록)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 또는 상인조직을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다만, 전자지역화폐의 경우에는 운영대행사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를 개별가맹점으로 볼 수 있다.

#### 1. (생 략)

2. 「전라남도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자

#### 3. 4. (생 략)

3. ----- 제9조  
2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를 -----.

#### 4. (현행과 같음)

제4조(지역화폐의 발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역화폐의 종류는 종이지역화폐, 전자지역화폐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다만, 카드 또는 모바일 등으로 발행하는 전자지역화폐는 권면금액을 따로 명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권면금액 : 5천원권, 1만원권, 5만원권

2. 유효기간 또는 발행일

3. 위변조 방지를 위한 일련번호, 유의사항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가맹점의 등록) ① -----  
-----  
----- . <단서 삭제>

#### 1. (현행과 같음)

2. 「목포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조례」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자

#### 3. 4.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 ③ (생 략)

<신 설>

②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 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제9조의2 (판매대행점과의 협약 등)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상품권의 보관 · 판매 · 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판매대행점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약기간

2. 의무 이행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에 관한 정보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④ 판매대행점은 목포사랑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등의 업무실적을 매 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실적을 목포사랑상품권의 발행 유통시스템에 전산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 ③  
(생 략)

제10조(가맹점의 준수사항)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종이지역화폐 가맹점의 소재지 또는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또는 신청하여야 한다.

제11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가맹점이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5. (생략)

<신설>

제22조(종이지역화폐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종이지역화폐의 보관, 판매 및 환전 업무 등을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금고로 지정될 수 있는 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판매대행점은 종이지역화폐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 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에 종이지역화폐의

④ -----  
---- 등이 변경되거나 가맹점 등록-  
-----  
-----  
-----.

제11조(가맹점 등록의 취소) ① -----  
-----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0조제4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의 취소

5. (현행과 같음)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목포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22조(종이지역화폐 업무의 위탁) ① -----  
-----  
-----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삭제>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의 유통내  
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위탁의 절차 및 판매대행점에 대  
한 지휘·감독 등에 대해서는 「목  
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전자지역화폐 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전자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적합한 기술을 가진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위탁의 절차 및 운영대행사에 대  
한 지휘·감독 등에 대해서는 「목  
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 설>

③ (현행과 같음)

④ 판매대행점-----  
-----  
-----  
---

제23조(전자지역화폐 업무의 위탁) ①  
-----  
-----  
----- 업체와 협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시 인  
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  
여야 한다.

② 운영대행사-----  
-----  
-----  
---

③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서에  
정한다.

제362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21일

##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30 호

### 목포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고용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용"이란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
2. "고용상의 차별행위"란 고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여부, 임신·출산, 가족 상황,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
3. "기초심사자료"란 취업희망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목포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2. 「목포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② 적용대상기관은 고용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만약 적용대상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장애인, 고령자, 여성, 청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합한 업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시행하여야 한다.

⑤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시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 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희망자 또는 소속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희망자에게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 상황 등을 기초 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3.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근로자가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차별행위 신고 등)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당한 시민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시에 그에 관하여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거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시장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 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며 그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다.

제10조(업무협조) 시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개선권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62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21일

##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31 호

### 목포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시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원되는 지역 화폐, 현금·상품권·선불카드 등 유가증권 또는 물품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긴급재난지원금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발생 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액과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는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목포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받아 시장이 결정한다.

③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원하며, 현금, 현물, 물품, 용역 등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조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된 재난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
2. 지원대상자의 신청이 없거나 수령을 거부한 경우
3.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원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② 시장은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자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62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21일

##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32 호

### 목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
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중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와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
3.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
4.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대) 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을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및 제증명 수수료
3. 공공체육시설 연습 사용료
4. 장사시설 사용료

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 요청) 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병역법 제82조 및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목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목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② 「목포시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목포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란 다음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                                  |
|----------------|------|-----|------|------|----------------------------------|
| 병역명문가<br>예우대상자 | 100% | 50% | 100% | 100% | 목포시에 주민등록을<br>두고 거주하는 자에<br>한한다. |
|----------------|------|-----|------|------|----------------------------------|

③ 「목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제2호부터 제14호”를 “제2호부터 제15호”로 개정한다.

제16조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목포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

④ 「목포국제축구센터 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목포다목적체육관 연습사용료에 한해 「목포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

별표의 “경노, 어린이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장애인”을 “경노, 어린이 국  
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장애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 한다.

⑤ 「목포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목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별표 3의 7란 다음에 8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  |
|---|-----------------------------------------|-----|--|
| 8 | 「목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br>따른 예우대상자 | 50% |  |
|---|-----------------------------------------|-----|--|

제362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21일

##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33 호

### 목포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라 시민이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체활동”이란 골격근의 작용으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 소비를 발생시키는 모든 움직임으로 운동, 스포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업무수행 중 몸을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기여하는 여러 요인 즉,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3. “신체활동 활성화”란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량을 늘림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4.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란 신체활동 관련 정보 제공 및 신체활동 친화 환경조성 등을 통해 시민의 신체활동 실천율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
2.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 및 지역사회 구성원 교육
3. 신체활동 취약계층(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지원

② 시장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유관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부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추진 목표
2.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추진 과제 및 방법
3.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신체활동 촉진을 위하여 목포시 신체활동 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평가 및 반영
3.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목포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라 한다)」에 따른 목포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위원회에서 대신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위탁운영 등) ① 시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 및 단체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참여자 지원) ① 시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자에 대한 동기 부여를 통하여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확산·전파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기준을 달성한 참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

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참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
2. 지원형태는 바우처, 지역화폐, 쿠폰 또는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참여자 지원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62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21일

##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34 호

### 목포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자치구, 공기업, 대학 등에”를 “공기업, 대학 등에”로 한다.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 제13조를 제14조로하고, 제14조를 제15조로하고,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포상) 시장은 1회용품 사용저감 관련 홍보 및 운영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3조(시장의 책무) ①·② (생략)                                       | 제3조(시장의 책무) ①·② (현행과 같음)                                                                         |
| ③ 시장은 <u>자치구</u> , 공기업, 대학 등에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 ③ ----- 공기업, 대학 등-----<br>-----.                                                                 |
| <u>&lt;신 설&gt;</u>                                         | <u>제12조(포상)</u> 시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 관련 홍보 및 운영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
| <u>제12조 ~ 제14조</u> (생략)                                    | <u>제13조 ~ 제15조</u> (현행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                                                        |

제362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21일

##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35 호

### 목포시 물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15조,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절수설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0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
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②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
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
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
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 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 시장은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법 제8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362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21일

##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36 호

### 목포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중요무형문화재의”를 “국가무형문화재의”로, “「문화재보호법」 제36조”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을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전수관””을 ““목포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관”이라 한다.)””로,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각각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제5조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제6조 중 “중요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문화재”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36조”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p>제1조 (목적) 이 조례는 <u>중요무형문화재</u>의 기·예능 보존과 전수를 위하여 「문화재보호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목포시 <u>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u>(이하 “전수관”이라 한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전수관”이라 함은 문화재청장이 지정한 <u>중요무형문화재</u>의 기·예능 보존 및 전수를 위하여 설치한 공방, 전시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p> <p>2. (생략)</p> <p>제4조 (업무 및 기능) 전수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p> <p>1. <u>중요무형문화재</u> 기·예능의 전수 및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p> <p>2. <u>중요무형문화재</u>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p> <p>3. <u>중요무형문화재</u>의 기·예능 보존을 위한 연구·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p> <p>4. · 5. (생략)</p> <p>제5조 (운영) 시장은 전수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u>중요무형문화재</u> 기·예능보</p> | <p>제1조 (목적) ----- <u>국가무형문화재</u>의 -----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br/>-- <u>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u>-----<br/>-----<br/>-----.</p> <p>제2조 (정의) -----<br/>-----.</p> <p>1. “<u>목포시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u>(이하 “전수관”이라 한다.)”<br/>---- <u>국가무형문화재</u>-----<br/>-----.</p> <p>2. (현행과 같음)</p> <p>제4조 (업무 및 기능) -----<br/>-----.</p> <p>1. <u>국가무형문화재</u> -----<br/>-----</p> <p>2. <u>국가무형문화재</u> -----<br/>---</p> <p>3. <u>국가무형문화재</u>-----<br/>-----</p> <p>4. · 5. (현행과 같음)</p> <p>제5조 (운영) -----<br/>--- <u>국가무형문화재</u> -----</p> |

유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 (전시물의 확보 등) 시장은 중요 무형문화재의 효율적인 홍보·교육 또는 기능전수를 위하여 전시 작품을 구입·기증·기탁·무료임대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여 전시할 수 있다.

제9조 (위탁 운영) ①시장은 전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위탁 운영할 때에는 운영 시 소요되는 경비에 대하여 수탁자의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문화재보호법」 제36조 및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생략)

-----.

제6조 (전시물의 확보 등) ---- 국가무형문화재-----

-----  
-----  
-----.

제9조 (위탁 운영) ①-----

-----  
-----  
-----  
-----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 -----  
-----  
-----.

② (현행과 같음)

제362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근대역사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21일

##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37 호

### 목포근대역사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근대역사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관람 전 관람 신청을 취소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관람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1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5조(관람료) ① ~ ③ (생략)<br><u>&lt;신설&gt;</u>                                                                                                                                                                                                                                                                                                                              | 제5조(관람료) ① ~ ③ (현행과 같음)<br>④ <u>시장은 관람 전 관람 신청을 취소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관람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u>                                                                                                                                                                                                                                                       |
| 제6조(무료관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br>1. (생략)<br>2. 「국가유공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br>3. 「독립유공자등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br>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br>5. 「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br>6. ~ 13. (생략)<br>14. 「목포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 (배우자, 부모, 자녀) | 제6조(무료관람) ① -----<br>-----<br>-----<br>----.<br>1. (현행과 같음)<br>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br>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br>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br>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br>6. ~ 13. (현행과 같음)<br>1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신 설>

1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17.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62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21일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38 호

###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관광문화체육국, 경제산업국에 관한 사항”을 “관광문화체육국, 경제산업국, 문예시설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사무소, 목포자연사박물관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목포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br>① · ② (생    략)<br>1. · 2. (생    략)<br>3. 관광경제위원회 :<br><u>관광문화체육국, 경제산업국에</u><br><u>관한 사항</u><br><br>4. (생    략) |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br>① · ② (현행과 같음)<br>1. · 2. (현행과 같음)<br>3. 관광경제위원회 :<br><u>관광문화체육국, 경제산업국,</u><br><u>문화시설관리사무소, 체육시설관리</u><br><u>사무소, 목포자연사박물관에 관한</u><br><u>사항</u><br>4. (현행과 같음) |

제362회 목포시의회에서 의결된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21일

##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조례 제 3439 호

###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7  
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시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목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시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겸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 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제7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검직신고 내역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허위·부정확 내역이 발견될 시 해당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소명이 미흡한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의원에게 검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시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의장은 검직현황의 정확성 확보를 위해 연 1회 검직신고를 안내하고 그 내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시의원의 검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목포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시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목포시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5조의 검직신고 사항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연 1회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시의원은 목포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목포시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2. 목포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단체
3. 목포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

④ 의장은 시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중전의 제7조)제1항 중 “의원”을 “시의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의원이”를 “시의원이”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징계 등) 시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치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시의원이 목포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시의원이 목포시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제11조(중전의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시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제5조 (검직신고) ① <u>시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검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u> | 제5조 (검직신고) ① <u>시의원이 당선전부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목포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u> |
| ② <u>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u>                               | ② <u>시의원이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검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검직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                                               |
| ③ <u>의장은 검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검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u>                 | ③ <u>시의원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u>                                                                                                 |
| <u>&lt;신 설&gt;</u>                                                                  | ④ <u>의장은 선거공보, 의원등록 시 이력사항, 각종 게시 자료, 제7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사항 등과 검직신고 내역을 대조 후 미신고 또는 허위·부정확 내역이 발견될 시 해당의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u>                                                |



의한 의정활동비의 보조활동비에  
서 결석한 회의일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60%를 감액 할 수 있다.  
다만, 1일동안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가 2회이상 개최되는 경우에  
는 각각의 회의에 적용하여 감액  
하고 같은 시간대에 회의가 중복  
개최되는 경우 한 회의만 참석해  
도 감액하지 아니한다.

#### <신 설>

####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시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  
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목포시장이 자  
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  
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  
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  
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5조의 겸직신고 사항  
과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비  
교하는 등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연 1회 점검  
하여야 한다.

#### 제8조(시행규칙) 시의원에 대한 윤리

#### 제11조(시행규칙) 의원에 대한 윤리

심사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신 설>

심사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시의

원은 목포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  
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목포시가 출자·출연한 기관·단체  
2. 목포시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  
하고 있는 기관·단체

3. 목포시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단체

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직원을 말한다.

④ 의장은 시의원이 제1항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징계 등) 시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치  
거나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  
계기준은 별표1에 따른다.

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6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

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  
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

4. 시의원이 목포시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

5. 시의원이 목포시와 계약체결

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  
권고를 거부

| 현행                               | 개정안                                                                                                                                                                                                                                                                                                                                                                                                                                                                                                                                                                                                                                                                                   |                                                                                                                                                    |                                              |      |            |                                                                                                                                                    |                                              |                                  |                                                                                                                                                                                                    |                                                                                          |
|----------------------------------|---------------------------------------------------------------------------------------------------------------------------------------------------------------------------------------------------------------------------------------------------------------------------------------------------------------------------------------------------------------------------------------------------------------------------------------------------------------------------------------------------------------------------------------------------------------------------------------------------------------------------------------------------------------------------------------|----------------------------------------------------------------------------------------------------------------------------------------------------|----------------------------------------------|------|------------|----------------------------------------------------------------------------------------------------------------------------------------------------|----------------------------------------------|----------------------------------|----------------------------------------------------------------------------------------------------------------------------------------------------------------------------------------------------|------------------------------------------------------------------------------------------|
| <신설>                             | [별표 1]                                                                                                                                                                                                                                                                                                                                                                                                                                                                                                                                                                                                                                                                                |                                                                                                                                                    |                                              |      |            |                                                                                                                                                    |                                              |                                  |                                                                                                                                                                                                    |                                                                                          |
|                                  | <u>징계기준(제9조 관련)</u>                                                                                                                                                                                                                                                                                                                                                                                                                                                                                                                                                                                                                                                                   |                                                                                                                                                    |                                              |      |            |                                                                                                                                                    |                                              |                                  |                                                                                                                                                                                                    |                                                                                          |
|                                  | <table><tr><th>비위의 유형</th><th>비위의 정도</th><th>적용기준</th></tr><tr><td>1. 겸직신고 위반</td><td><div>○ 겸직 불성실신고<br/>(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div><div>-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div><div>○ 겸직 미신고 및 허위신고</div><div>○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br/>(법 제36조제2항 위반)</div></td><td>경고<br/><br/><br/>경고, 공개사과<br/><br/>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td></tr><tr><td>2. 영리거래 금지<br/><br/>(수익계약체결 제한 위반)</td><td><div>○ 영리거래금지 위반</div><div>○ 수익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 신고(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div><div>-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div><div>○ 수익계약체결 제한 사항 미신고 및 허위신고</div><div>○ 계약체결 제한 위반</div><div>○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div></td><td>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br/><br/>경고<br/><br/><br/>경고, 공개사과<br/><br/>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br/><br/>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td></tr></table> |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                                       | 적용기준 | 1. 겸직신고 위반 | <div>○ 겸직 불성실신고<br/>(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div> <div>-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div> <div>○ 겸직 미신고 및 허위신고</div> <div>○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br/>(법 제36조제2항 위반)</div> | 경고<br><br><br>경고, 공개사과<br><br>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2. 영리거래 금지<br><br>(수익계약체결 제한 위반) | <div>○ 영리거래금지 위반</div> <div>○ 수익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 신고(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div> <div>-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div> <div>○ 수익계약체결 제한 사항 미신고 및 허위신고</div> <div>○ 계약체결 제한 위반</div> <div>○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div> |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br><br>경고<br><br><br>경고, 공개사과<br><br>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br><br>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                                  | 비위의 유형                                                                                                                                                                                                                                                                                                                                                                                                                                                                                                                                                                                                                                                                                | 비위의 정도                                                                                                                                             | 적용기준                                         |      |            |                                                                                                                                                    |                                              |                                  |                                                                                                                                                                                                    |                                                                                          |
|                                  | 1. 겸직신고 위반                                                                                                                                                                                                                                                                                                                                                                                                                                                                                                                                                                                                                                                                            | <div>○ 겸직 불성실신고<br/>(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div> <div>-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div> <div>○ 겸직 미신고 및 허위신고</div> <div>○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br/>(법 제36조제2항 위반)</div> | 경고<br><br><br>경고, 공개사과<br><br>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            |                                                                                                                                                    |                                              |                                  |                                                                                                                                                                                                    |                                                                                          |
| 2. 영리거래 금지<br><br>(수익계약체결 제한 위반) | <div>○ 영리거래금지 위반</div> <div>○ 수익계약체결 제한 사항 불성실 신고(윤리심사 후 2회 통고를 받은 자)</div> <div>- 신고지연, 변경신고 해태 등</div> <div>○ 수익계약체결 제한 사항 미신고 및 허위신고</div> <div>○ 계약체결 제한 위반</div> <div>○ 관리인 겸직 사임권고 불이행</div>                                                                                                                                                                                                                                                                                                                                                                                                                                                                                    | 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br><br>경고<br><br><br>경고, 공개사과<br><br>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br><br>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현 행                                                                                     |     |         |  |         | 개 정 안                                                                                  |       |           |         |  |
|-----------------------------------------------------------------------------------------|-----|---------|--|---------|----------------------------------------------------------------------------------------|-------|-----------|---------|--|
| 〔별지 제1호 서식〕                                                                             |     |         |  |         | 〔별지 제1호 서식〕                                                                            |       |           |         |  |
| <b>목포시의원 겸직(변경)신고서</b>                                                                  |     |         |  |         | <b>목포시의회의원 겸직(변경)신고서</b>                                                               |       |           |         |  |
| 소속정당                                                                                    |     | 지 역 구   |  | 선 거 구 분 |                                                                                        | 지 역 구 |           | 선 거 구 분 |  |
| 성 명                                                                                     | 한 글 | 비례대표    |  | 생년월일    |                                                                                        | 비례대표  |           | 생년월일    |  |
|                                                                                         | 한 자 |         |  |         |                                                                                        |       |           |         |  |
| 기관·단체명                                                                                  |     | 재직기간    |  |         | 전화번호                                                                                   |       | 주 소       |         |  |
| 직 위                                                                                     |     |         |  |         |                                                                                        |       |           |         |  |
| 보 수                                                                                     |     | (택일) 연월 |  |         | 보수수령 여부                                                                                |       | 보수 미수령 여부 |         |  |
| 주 소                                                                                     |     | 전화번호    |  |         |                                                                                        |       |           |         |  |
|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을 신고합니다.                                                    |     |         |  |         | 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목포시의회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변경) 사항을 신고합니다.       |       |           |         |  |
| <div style="text-align: right;"> <b>목포시의회 의원 (인)</b><br/><br/> <b>목포시의회의장 귀하</b> </div> |     |         |  |         | <div style="text-align: right;"> <b>목포시의회의원 (인)</b><br/><br/> <b>목포시의회의장 귀하</b> </div> |       |           |         |  |

|       |                                                                                                                                                                                                                                              |     |  |                  |       |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신 설> | [별지 제2호서식]                                                                                                                                                                                                                                   |     |  |                  |       |
|       |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                                                                                                                                                                                                                               |     |  |                  |       |
|       | 소속정당                                                                                                                                                                                                                                         |     |  | 선<br>거<br>구<br>분 | 지 역 구 |
|       | 성<br>명                                                                                                                                                                                                                                       | 한 글 |  | 비례대표             |       |
|       |                                                                                                                                                                                                                                              | 한 자 |  | 생년월일             |       |
|       | <p>지방자치법 제35조제3항 및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목포시의회의원 (인)</p> <p style="text-align: right;">목포시의회의장 귀하</p> |     |  |                  |       |

| 현 행                                                                                                                                                                                                                                                                           | 개 정 안                         |        |           |      |                   |      |                   |            |         |    |
|-------------------------------------------------------------------------------------------------------------------------------------------------------------------------------------------------------------------------------------------------------------------------------|-------------------------------|--------|-----------|------|-------------------|------|-------------------|------------|---------|----|
| <신 설>                                                                                                                                                                                                                                                                         | [별지 제3호서식]                    |        |           |      |                   |      |                   |            |         |    |
|                                                                                                                                                                                                                                                                               | 목포시의회 의원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변경) 신고서 |        |           |      |                   |      |                   |            |         |    |
|                                                                                                                                                                                                                                                                               | 성 명                           |        |           |      |                   | 생년월일 |                   |            |         |    |
|                                                                                                                                                                                                                                                                               | 수의<br>계약<br>체결<br>제한<br>관련자   |        | 총 명       |      |                   |      |                   |            |         |    |
|                                                                                                                                                                                                                                                                               |                               |        | 본인 관련자 명  |      |                   |      | 본인, 직계존·비속 명      |            |         |    |
|                                                                                                                                                                                                                                                                               |                               |        | 배우자 관련자 명 |      | 유 무               |      | 배우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명 |            |         |    |
|                                                                                                                                                                                                                                                                               |                               |        |           |      |                   |      | -                 |            |         |    |
|                                                                                                                                                                                                                                                                               | 연<br>번                        | 관<br>계 | 성 명       | 생년월일 | 사업자명<br>(상호, 법인명) | 대표자  | 사업자<br>등록번호       | 사업장<br>소재지 | 지분<br>율 | 기타 |
|                                                                                                                                                                                                                                                                               | 1                             |        |           |      |                   |      |                   |            |         |    |
|                                                                                                                                                                                                                                                                               | 2                             |        |           |      |                   |      |                   |            |         |    |
|                                                                                                                                                                                                                                                                               | 3                             |        |           |      |                   |      |                   |            |         |    |
|                                                                                                                                                                                                                                                                               | 4                             |        |           |      |                   |      |                   |            |         |    |
|                                                                                                                                                                                                                                                                               | 5                             |        |           |      |                   |      |                   |            |         |    |
|                                                                                                                                                                                                                                                                               | 6                             |        |           |      |                   |      |                   |            |         |    |
|                                                                                                                                                                                                                                                                               | 7                             |        |           |      |                   |      |                   |            |         |    |
| 8                                                                                                                                                                                                                                                                             |                               |        |           |      |                   |      |                   |            |         |    |
| 9                                                                                                                                                                                                                                                                             |                               |        |           |      |                   |      |                   |            |         |    |
| 10                                                                                                                                                                                                                                                                            |                               |        |           |      |                   |      |                   |            |         |    |
| ※ 관계는 본인, 배우자, 본인직계존·비속,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 구분<br>※ 지방계약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기재하되, 사업자 등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재<br>※ '기타'에는 지방계약법 제33조제2항 각호 사유를 입력<br>※ 변경사항 발생시 즉시 신고                                                                                                              |                               |        |           |      |                   |      |                   |            |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33조·제33조의2 및 목포시의회 의원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의계약체결제한 사항을 신고합니다.<br><br><div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br/><br/>             목포시의회의원 (인)<br/><br/> <div style="text-align: right;">목포시의회의장 귀하</div> </div> |                               |        |           |      |                   |      |                   |            |         |    |

목포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0년 12월 21일

## 목 포 시 장 김 종 식

목포시 규칙 제 1807 호

### 목포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칙 일부개정규칙

목포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목포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칙”을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으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 분야에 대한 자치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목포시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
3. “정책연구용역비”란 연구단체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경비로 의원정책 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6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내용의 타당성, 사업비, 사업기간의 적정성

제7조의 제목 “(연구활동비 지원)”을 “(연구활동비의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범위 내”를 “범위”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정책연구 발주시에는 정책개발비에서 지원하되,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른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p style="text-align: center;"><u>목포시의회의원연구단체구성및지원규칙</u></p> <p>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목포시의회<br/>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 라 한<br/>다)라 함은 특정의 주제 및 관심분야<br/>에 관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정<br/>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사무국에<br/>등록된 단체를 말한다.</p> <p>제6조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br/>의 사항을 심의한다.</p> <p>1. ~ 4. (생 략)</p> <p><u>&lt;신 설&gt;</u></p> <p>5. (생 략)</p> <p>제7조 (연구활동비 지원) ① 목포시의<br/>회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p> | <p style="text-align: center;"><u>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u></p> <p>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br/>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목포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br/>“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 분야에<br/>대한 자치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br/>개발 등을 목적으로 목포시의회에<br/>등록된 단체를 말한다.</p> <p>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가 연구<br/>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로<br/>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br/>정비용을 말한다.</p> <p>3. “정책연구용역비”란 연구단체가<br/>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 경비로<br/>의원정책개발비에서 지원되는 비용<br/>을 말한다.</p> <p>제6조 (심의사항) -----<br/>-----.</p> <p>1. ~ 4. (현행과 같음)</p> <p>5. <u>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내용의 타당성,</u><br/><u>사업비, 사업기간의 적정성</u></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p>제7조 (연구활동비의 지원 등) ① ----<br/>-----</p> |

영공통경비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 당  
500만원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③ (생 략)

-----  
----- 범위-----  
-----. 다만, 정책연구 발주  
시에는 정책개발비에서 지원하되, 정  
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에 따른다.

②·③ (현행과 같음)

## 입 법 예 고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 목 포 시 장

### 1. 조 례 명 :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 2. 개정이유

- 인구증가 시책에 적극 협조한 전입 우수 기관·기업 포상 근거 마련
- 전입대학생의 관내 장기 거주 유도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지원금 증액

### 3. 주요내용

- 전입 우수 기관·기업 용어의 정의 신설(안 제2조)
- 전입 우수 기관·기업 포상 근거 마련(안 제8조~제9조)
  - 제8조제3조, 제9조제3항, 제10조제3항 신설
  - 전입 우수 표창 : 최우수상(1), 우수상(2), 장려상(3)
  - 전입인원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등 차등지급
- 제3장 전입축하 지원 관련(별표)
  - 제9조제2항 중 “별표”의 지원기준 중 전입대학생 생활안정자금 2,3회차 지원금 증액 개정

| 구 분              | 현 행  | 개 정  |
|------------------|------|------|
| 총 액              | 40만원 | 60만원 |
| 1회차 (전입신고 시)     | 20만원 | 20만원 |
| 2회차 (전입 후 1년 유지) | 10만원 | 20만원 |
| 3회차 (전입 후 2년 유지) | 10만원 | 20만원 |

- 제9조제3항 중 “별표” 의 전입 우수 기관기업 지원내용 신설

#### 4.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23조제1항
- 「지방재정법」 제17조
- 「지방자치법」 제22조

#### 5.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 료
- 규제심사(심의) 대상 여부 : 해당없음

#### 6. 개정 조례(안) : 별첨

#### 7. 입법예고 기간 : 2020. 12. 21. ~ 2021. 1. 11.(21일간)

#### 8. 의견제출

- 이 규칙의 입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 라. 제출서식

| 조례안 내용 | 의견 | 비고 |
|--------|----|----|
|        |    |    |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우58724] 전남 목포시 양을로203(용당동),  
목포시청 3층 기획예산과

## 8.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기획예산과(☎061-270-8505, FAX 270-35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규칙안 내용 | 찬성여부 |    | 의견 | 비고 |
|--------|------|----|----|----|
|        | 찬성   | 반대 |    |    |
|        |      |    |    |    |

##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전입 우수 기관·기업”이란 인구증가시책에 적극 협조한 기관·기업을 말한다.

제8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전입 우수 기관·기업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8조제3호의 지원 대상자에게 「목포시 포상 조례」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지원내용 및 기준(제9조 관련)

| 구분         | 시책명                  | 적용기준         | 지원내용 및 지급방법                                                                                                                                      |
|------------|----------------------|--------------|--------------------------------------------------------------------------------------------------------------------------------------------------|
| 전입축하<br>지원 | 전입 축하<br>기념품 지원      | 조례제9조<br>제1항 | 2명 이상 전입신고 세대<br>- 온누리상품권 등 지급(1회 지원)                                                                                                            |
|            | 전입 대학생<br>지원         | 조례제9조<br>제2항 | 총 60만원 현금 지급<br>(각 회차별 1회 지급으로 한함)<br>1. (1회) 전입신고 시 20만원 지급<br>2. (2회) 전입신고 1년간 계속 거주하였을 때<br>20만원 지급<br>3. (3회) 전입신고 2년간 계속 거주하였을 때<br>20만원 지급 |
|            | 전입 우수<br>기관·기업<br>지원 | 조례제9조<br>제3항 | ○ 전입 우수 기관·기업 포상<br>○ 전입신고 종사자(근로자)<br>- 온누리상품권 등 지급(1회 지원)                                                                                      |

## 신 · 구조문대비표

| 현<br>행                                  | 개<br>정<br>안                                                                     |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제2조(용어의 정의) -----<br>-----.                                                     |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 9. 삭 제                                  |                                                                                 |
| <u>&lt;신 설&gt;</u>                      | 10. “ <u>전입 우수 기관 · 기업</u> ”이란<br><u>인구증가시책에 적극 협조한 기관</u><br><u>· 기업을 말한다.</u> |
| 제8조(지원대상) 전입축하 지원 대상자는<br>다음 각 호와 같다.   | 제8조(지원대상) -----<br>-----.                                                       |
| 1. · 2. (생 략)                           | 1. · 2. (현행과 같음)                                                                |
| <u>&lt;신 설&gt;</u>                      | 3. <u>전입 우수 기관 · 기업</u>                                                         |
| 제9조(지원기준) ① · ② (생 략)                   | 제9조(지원기준) ① · ② (현행과 같음)                                                        |
| <u>&lt;신 설&gt;</u>                      | ③ <u>시장은 제8조제3호의 지원 대상자</u><br><u>에게 「목포시 포상 조례」 따라 포상</u><br><u>할 수 있다.</u>    |
| 제10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 ② (생 략)             | 제10조(지원신청 및 절차) ① · ② (현행과<br>같음)                                               |
| <u>&lt;신 설&gt;</u>                      | ③ <u>시장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지원</u><br><u>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u>                         |

〔별 표〕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지원내용 및 기준

| 구분                    | 시책명             | 적용<br>기준     | 지원내용 및 지급방법                                                                                                                                                       |
|-----------------------|-----------------|--------------|-------------------------------------------------------------------------------------------------------------------------------------------------------------------|
| 전입촉하<br>지원<br>(제9조관련) | 전입 축하<br>기념품 지원 | 조례제8조<br>제1호 | 2명 이상 전입신고 세대<br>- 온누리상품권 등 지원<br>(1회지원)                                                                                                                          |
|                       | 전입 대학생<br>지원    | 조례제8조<br>제2호 | 총40만원 생활안정자금 지급<br>(각 화차별 1회 지급으로 한함)<br>1. (1회) 전입신고 시<br>20만원 지급<br>2. (2회) 전입신고 이후<br>1년간 계속 거주하였을 때<br>10만원 지급<br>3. (3회)전입신고 이후<br>2년간 계속 거주하였을 때<br>10만원 지급 |

〔별 표〕

인구증가 시책별 세부지원내용 및 기준(제9조 관련)

| 구분         | 시책명                  | 적용<br>기준     | 지원내용 및 지급방법                                                                                                                                                       |
|------------|----------------------|--------------|-------------------------------------------------------------------------------------------------------------------------------------------------------------------|
| 전입촉하<br>지원 | 전입 축하<br>기념품 지원      | 조례제9조<br>제1항 | 2명 이상 전입신고 세대<br>- 온누리상품권 등 지원<br>(1회지원)                                                                                                                          |
|            | 전입 대학생<br>지원         | 조례제9조<br>제2항 | 총60만원 생활안정자금 지급<br>(각 화차별 1회 지급으로 한함)<br>1. (1회) 전입신고 시<br>20만원 지급<br>2. (2회) 전입신고 이후<br>1년간 계속 거주하였을 때<br>20만원 지급<br>3. (3회)전입신고 이후<br>2년간 계속 거주하였을 때<br>20만원 지급 |
|            | 전입 우수<br>기관·기업<br>지원 | 조례제9조<br>제3항 | ○ 전입 우수 기관기업 포상<br>○ 전입신고 종사자(근로자)<br>- 온누리상품권 등 지원<br>(1회 지원)                                                                                                    |

## 입 법 예 고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0년 12월 21일

## 목 포 시 장

1. 조 례 명 :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이유

- 인구증가 시책에 적극 협조한 전입 우수 기관·기업 포상 근거 마련
- 전입대학생의 관내 장기 거주 유도를 위한 생활안정자금 변경
- 전입세대 축하 지원 내용 변경

3. 주요내용

- 제4조 전입축하 지원내용
  - 인구증가 시책에 적극 참여한 전입 우수 기관·기업 지원 내용 신설
  - 전입대학생 지원 금액 변경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 → 생활안정자금)
  - 전입세대에게 목포시 관광 및 시책 종합 안내를 위한 축하기념품 지급  
(1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 등 → 온누리상품권 등)

4.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23조제1항
- 「지방재정법」 제17조
- 「지방자치법」 제22조

## 5. 관련부서 의견

- 부패영향평가 : 해당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완 료
- 규제심사(심의) 대상 여부 : 해당없음

## 6. 개정 규칙(안) : 별첨

## 7. 입법예고 기간 : 2020. 12. 21. ~ 2021. 1. 11.(21일간)

## 8. 의견제출

- 이 규칙의 입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목포시장(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라. 제출서식

|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     |

※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우58724] 전남 목포시 양을로203(용당동),  
목포시청 3층 기획예산과

## 9.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목포시청 홈페이지 (<http://www.mokpo.go.kr>)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목포시청 기획예산과(☎061-270-8505, FAX 270-35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 규칙안 내용 | 찬성여부 |    | 의견 | 비고 |
|--------|------|----|----|----|
|        | 찬성   | 반대 |    |    |
|        |      |    |    |    |

##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1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등”을 “온누리상품권 등”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또는 온누리 상품권”을 “생활안정  
자금”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인구증가 시책에 적극 참여한 전입 우수 기관·기업에 대하여 전입 실적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등 차등 지급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대해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지 제4호 서식]

## 전입 우수 기관·기업 지원신청서

|               |         |    |       |  |
|---------------|---------|----|-------|--|
| 기관<br>·<br>기업 | 주 소     |    |       |  |
|               | 기관(기업)명 |    | 사업자번호 |  |
|               | 연 락 처   | 회사 | 계좌번호  |  |

### 세 부 신 청 사 항 (해당란에 기재)

|               |    |     |                |      |      |     |
|---------------|----|-----|----------------|------|------|-----|
| 전입자<br>(피고용인) | 연번 | 성 명 | 생년월일<br>(남, 여) | 전 주소 | 현 주소 | 전입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목포시장 귀하

※ 붙임서류

- ☞ 기관(업체) 대표 통장사본 1부. 전입자 재직증명서 및 주민등록초본 1부.
- ☞ 신청 시 전입자 명부 등 추가로 필요한 사항은 별지로 작성 첨부 가능

※ 뒷면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뒷면]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제1조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 전입하는 세대에 대하여 “목포시 전입 우수 기관·기업 지원신청서” 제출 시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 목포시 관내 거주기간, 전입가족 현황 기타 별도로 정하여 안내한 사항
- 기본적인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등)는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목포시 전입 우수 기관·기업 지원신청서”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 제2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목포시 전입 우수 기관·기업 지원신청서(성명, 주소, 전입가족현황, 거주기간 등) 활용
- 수집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제3조 개인정보 보유기간 경과 후 조치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한 후에는 해당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 제4조 개인정보 파기절차 방법

- 파기절차
  - 내부 방침 및 기타 관련 법령에 의한 정보보호 사유에 따라 일정 기간 저장된 후 파기되어 집니다.
  - 단, 관련 법률에 따라 보관의 목적으로만 이용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형태로 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삭제합니다.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과 정책 수립을 위해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전입 우수 기관·기업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를 숙지함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

성 명 :

(서명)

【 별첨 2 : 신·구조문 대비표 】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 개정안                                                                 |
|------------------------------------------------------------------------------|---------------------------------------------------------------------|
| 제4조(전입축하 지원내용) 조례 제8조에 따른 전입세대와 전입대학생에 대한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4조(전입축하 지원내용) —————<br>—————<br>—————.                             |
| 1. 2명이상 전입한 세대에 대하여 <u>1만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등</u> 지급                              | 1. ————— <u>온누리 상품권 등</u> —————                                     |
| 2. 관내에 소재한 대학(교) 재학생 중 시에 전입신고를 한 학생에 대하여 <u>5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또는 온누리 상품권</u> 지급 | 2. —————<br>————— <u>생활안정자금</u> —————<br>—                          |
| <u>&lt;신 설&gt;</u>                                                           | 3. <u>인구증가 시책에 적극 참여한 전입 우수 기관·기업에 대하여 전입 실적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등 차등 지급</u> |